

##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 ~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	2008. 11. 13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개정이유

-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주민전체에 대하여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,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통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 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신설 (안 제5조제3항)
  -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편향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함
- 다.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함  
(안 제2조, 제3조, 제3조의2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3, 제30조의4, 제47조, 제51조
 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7조의2, 제7조의3
  - 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 일부개정(안) [경남도 행정과-5769호('08.9.10)]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
- 라. 그 밖에
  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  - 2) 입법예고(2008. 10. 22. ~ 11. 10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  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 조례 제 호

###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거창군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거창군 지방공무원”으로, “규정함으로”를 “규정함을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공무원”을 “거창군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“별표1””을 “별표 1”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성실로서”를 “성실로써”로, “맡은바”를 “맡은 바”로 한다.

제3조의2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”를 “사용해서는 안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“별표2””를 “별표 2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친절·공정”을 “친절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이외”를 “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근무상의”를 “근무를 위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”를 “당직 및 비상근무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 안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”를 “소비해서는 안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안”을 “내”로, “발생할 때에는”을 “발생하면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잔무처리상”을 “잔무처리를 위해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근무중”을 “근무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공무원증규칙」(총리령)”을 “「공무원증규칙」(행정안전부령)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단서 중 “인정할 때에는”을 “인정하면”으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 내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인정할 때에는”을 “인정하면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공무수행상”을 “공무수행을 위해”로, “인정할 때에는”을 “인정하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서”로, “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”으로, “법령에 의한”을 “법령에 따른”으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한하여는”을 “대하여는”으로, “일일”을 “1일”로

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9조제5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아니하고”를 “않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년”을 “연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있을 때에는”을 “있으면”으로, “공무수행상”을 “공무수행을 위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아니할”을 “않을”로, “연가를 가름”을 “연가에 같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발생한 경우에는”을 “발생하면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본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일할”을 “월할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아니하며”를 “않으며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소숫점”을 “소수점”으로,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본문 중 “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”으로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 내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 내”로 한다.

제22조 본문 중 “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병역법」 기타”를 “「병역법」 또는 그 밖의”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“의한”을 각각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“별표 3””을 “별표 3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”을

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 중 “재해구호허가”를 “재해구호휴가”로 한다.

제2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“휴가 기간중”을 “휴가기간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며, 같은 조 단서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거창군 지방공무원</u> 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거창군 지방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복무선서) ① <u>공무원</u>은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선서는 “<u>별표1</u>”의 선서문에 <u>의한다</u>.</p>	<p>제2조(복무선서) ① <u>거창군 지방공무원</u> 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----- --- <u>따라</u> ----- -----. ② ----- <u>별표 1</u>----- <u>따른다</u>.</p>
<p>제3조(책임완수)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</u>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책임완수) ----- ----- ----- <u>성실로써 맡은 바</u> -----.</p>
<p>제3조의2(비밀엄수) 공무원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<u>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</u>.</p> <p>1. <u>법령에 의하여</u> 비밀로 지정된 사항 2. ~ 3. (생략) 4. <u>기타</u>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</p>	<p>제3조의2(비밀엄수) ----- <u>각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<u>사용해</u> ----- <u>서는 안 된다</u>. 1. --- <u>따라</u> 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근무기강 확립) ① (생략) ② 공무원은 “<u>별표2</u>”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근무기강 확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별표 2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친절·공정) ① 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<u>친절·공정</u>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5조(친절·공정) ① ----- ----- ----- <u>친절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,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, 숙직, 방호원 그 <u>이외</u>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,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, 사변 또는 천재지변 <u>기타</u>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<u>근무상</u>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</u>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,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</p> <p>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외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<u>근무를 위하여</u> ----- -----.</p> <p>③ <u>당직 및 비상근무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<u>범위 안</u>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출장공무원)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(이하 “출장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<u>당해</u>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,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<u>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p>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<u>안</u>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<u>발생할 때에는</u> 전화,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8조(출장공무원) ①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<u>소비해서는 안 된다.</u></p> <p>② ----- <u>내</u> ----- <u>발생하면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겸임근무)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p> <p>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<u>당해</u>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겸임근무) ①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파견근무)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p>	<p>제10조(파견근무) ①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



현행	개정안
<p>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<u>당해</u>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국외의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재외공무원복무규정」(대통령령)을 준용한다.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<u>기타</u>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<u>잔무</u>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----- ----- <u>잔무</u> <u>처리를</u> 위해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복장 등) ① 공무원은 <u>근무중</u>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「<u>공무원증규칙</u>」(총리령)을 준용한다.</p>	<p>제12조(복장 등) ① ----- <u>근무 중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「<u>공무원증규칙</u>」(행정안전부령)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근무시간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·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3조(근무시간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인정하면 ----- 범위 내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근무시간 등의 변경) 군수는 직무의 성질·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근무시간 등의 변경) ----- ----- ----- 따라 ----- 인정하면 ----- -----.</p>
<p>제15조(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----- 공무수행을 위해 ----- 인정하면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해당 ----- ----- 그 밖의 ----- ----- -----.</p>



현행	개정안
<p>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일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<u>공무수행상</u>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</p>	<p>④ ----- ----- 있으면 <u>공무수행을 위해</u> ----- -----.</p>
<p>⑤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<u>당해</u>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<u>아니할</u>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가름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⑤ ----- ----- 따른 ----- <u>해당</u> ----- <u>않을</u> ----- ----- <u>연가에 같음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<u>당해연도</u>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<u>당해연도</u>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⑥ ----- <u>해당</u>----- ----- <u>발생하면</u>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----- -----.</p>
<p>제20조(연가일수에의 공제) ① (생략)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<u>당해연도</u>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일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<u>아니하며</u>,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 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 <u>당해년도</u> 연가일수×(12월-<u>당해년도</u> 휴직기간(월))/12월</p>	<p>제20조(연가일수에의 공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따른 ----- ----- <u>해당</u>----- ----- <u>일할</u> ----- ----- ----- <u>않으며</u>, ----- <u>따라</u> ----- <u>소수점</u> -- ----- -----. ○ ----- = <u>해당연도</u> ----- ---(--- <u>해당연도</u> -----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1조(병가)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,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1조(병가) ①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</u> ----- <u>범위 내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<u>않는다.</u>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범위 내</u>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2조(공가)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</p> <p>1. 「병역법」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, 소집, 검열,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</p> <p>2. 공무에 관하여 국회, 법원, 검찰,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</p> <p>3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</p>	<p>제22조(공가)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</u> ----- ----- ----- 1. 「<u>병역법</u>」 또는 그 밖의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2.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3.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6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29조의 규정에 <u>의한</u>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</p> <p>7. (생략)</p> <p>8. 천재지변, 교통차단, <u>기타의</u>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</p> <p>9. (생략)</p>	<p>6.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<u>그 밖의</u> ---- -----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3조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<u>기타</u>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“<u>별표 3</u>”의 기준에 <u>의한</u>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<u>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</u>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 <p>⑥ ~ ⑨ (생략)</p> <p>⑩ 풍해·수해·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<u>재해구호휴가</u>를 얻을 수 있다.</p>	<p>제23조(특별휴가) ①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 <u>별표 3</u>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 「<u>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</u>」에 따른 ----- ----- -----.</p> <p>⑥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⑩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해구호휴가</u>----- ---</p>
<p>제24조(<u>휴가 기간중의</u> 토요일 또는 공휴일) <u>휴가 기간중의</u>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<u>아니한다</u>. 다만,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<u>의한</u>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<u>그러하지</u> 아니하다.</p>	<p>제24조(<u>휴가기간 중의</u> 토요일 또는 공휴일) <u>휴가기간 중</u>----- ----- <u>않는다</u>.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<u>그렇지 않다</u>.</p>